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목 차>

1. 어린이용 키보드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작 성 자	이름	김석
	담당부서 (과)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양홍석		연락처	043-870-5455
	과장	김명곤		이메일	serene031 @korea.kr

2026. 07. 0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2.규제조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 5.2.1~5.2.4조, 5.2.7조, 5.3.4조, 8.1~8.3조								
	3.위임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7.09~2026.09.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어린이용 킥보드의 구조, 성능 보완 및 어린이용 킥보드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사항 개선을 통한 어린이 등 소비자 안전 확보 필요								
	7.규제내용	○ 어린이용 킥보드의 앞바퀴 직경, 조향축(핸들 기둥) 높이, 바퀴의 접착 강도 등 안전요건 보완 및 사용상 주의 사항 등 표시 사항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어린이용 킥보드 구매시 보완된 안전요건을 반영한 제품의 안전성 제고 및 안전 관련 정보 제공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어린이용 킥보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이해관계자 : 국민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제조업체 및 수입업체</td><td>국내 약 60개 업체</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국내 약 60개 업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국내 약 60개 업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요건 정립 및 표시사항 개선을 통해 제품의 물리적 안전성과 품질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일조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90.86		90.86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 급 자 적 합 성 안 전 기 준 어린이용 키펀드 부속서 12 5.2 구조 5.2.1 손잡이는 우레탄, 스펀지 등 피복물질로 피복되어 있어야 하며 10N의 힘으로 당겼을 때 빠지지 말아야 한다. 5.2.2 핸들 고정핀은 100회 작동시 스프링이탈, 작동불량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5.2.3 만 8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핸드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만 8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브레이크가 있어 조작이 쉽고 확실하게 속도를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5.2.4 핸들 높이를 조절하는 고정레버는 작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고정시켰을 때 아래로 미끄러지거나 유격으로 덜컹거리지 않아야 한다. 5.2.5 접거나 펼 때 사용되는 각종 레버는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드럽게 작동되어야 한다. 5.2.6 전기 등 에너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기장치 또는 동력장치가 없어야 한다. <u><신설></u>	공 급 자 적 합 성 안 전 기 준 어린이용 키펀드 부속서 12 5.2 구조 5.2.1 손잡이는 우레탄, 스펀지 등 피복물질로 피복되어 있어야 하며 10N의 힘으로 당겼을 때 빠지지 말아야 한다. 5.2.2 핸들 고정핀은 100회 작동시 스프링이탈, 작동불량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5.2.3 만 8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핸드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만 8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브레이크가 있어 조작이 쉽고 확실하게 속도를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5.2.4 핸들 높이를 조절하는 고정레버는 작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고정시켰을 때 아래로 미끄러지거나 유격으로 덜컹거리지 않아야 한다. 5.2.5 접거나 펼 때 사용되는 각종 레버는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드럽게 작동되어야 한다. 5.2.6 전기 등 에너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기장치 또는 동력장치가 없어야 한다. <u>5.2.1 B 등급 키펀드 앞바퀴의 직경은 120 mm 이상이어야 한다.</u> <u>5.2.2 B 등급 키펀드에 조향축 높이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조절된 높이를 고정하는 2가지 이상의 순차적 고정장치가 적용되어야 한다.</u> <u>5.2.3 B 등급 키펀드의 순차적 고정장치는 높이가 조절될 경우 자동으로 맞물리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5.2.4 조향축 높이 조절이 가능한 킥보드는 최대 높이로 조절할 때 분할된 조향축의 최소 삽입 깊이에 대한 영구적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5.2.5 조향축 높이를 조절하는 고정장치는 작동이 원활하여야 하며 작동되었을 때 조향축이 아래로 미끄러지거나 유격으로 덜컥거리지 않아야 한다. * 비규제 조문 5.2.6 접거나 펼 때 사용되는 각종 레버는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드럽게 작동되어야 한다. * 비규제 조문 5.2.7 킥보드는 후륜에서 작동하며 효과적이고 부드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최소 하나의 제동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3 성능 5.3.4 바퀴의 경도 바퀴의 경도는 6.6의 경도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6.6.1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일 경우 70 이상, 6.6.2 바퀴의 재질이 고무일 경우 65 이상이어야 한다. <u><신설></u>	5.3 성능 5.3.4 바퀴의 경도 바퀴의 경도는 6.6의 경도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6.6.1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일 경우 70 이상, 6.6.2 바퀴의 재질이 고무일 경우 65 이상이어야 한다. 5.3.4 바퀴의 접착 강도 6.3.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마찰계수(μ_0)는 0.3 이상이어야 한다.
6.3.4 바퀴의 접착 강도 <u><신설></u>	6.3.4 바퀴의 접착 강도 그림 5와 같이 바퀴에 (100 ± 5) N의 힘(F_1)을 인가하고 표면 거칠기(R_a)가 1.5 μm에서 2.0 μm인 강철판 위에서 표면 거칠기 방향과 직각으로 바퀴의 축 높이에서 약 1 mm/s의 속도로 인장 힘(F_2)을 인가할 때 바퀴가 움직이는 시점의 인장 힘(F_2)을 측정한다. 10회 반복 측정 후 평균($\overline{F_2}$)을 계산한다.

현행	개정안
	마찰계수(μ_0)는 식(1)에 따라 계산한다. $\mu_0 = \frac{\overline{F_2}}{m_E \times g + F_1}$ 식(1) 여기에서 μ_0 : 마찰계수 F_1 : 바퀴에 인가된 힘(N) $\overline{F_2}$: 인장 힘 평균값(N) m_E : 바퀴와 보조도구 질량(kg) g : 중력가속도($g = 9.81 \text{ m/s}^2$) 그림 5 — 바퀴의 접착 강도 * 비규제 조문
8. 표시사항 8.1 표시 제품 및 최소 포장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손잡이나 발판 포함)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u><신설></u>	8. 표시사항 8.1 표시 제품 및 최소 포장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손잡이나 발판 포함)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8.1 일반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8.1.1 모델명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 8.1.5 주소 및 전화번호 8.1.6 제조국명 8.1.7 사용연령 :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십시오."(핸드 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에 한함) 8.1.8 한계하중(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u><신설></u>	8.1.1 (현행과 같음) 8.1.2 (현행과 같음) 8.1.3 (현행과 같음) 8.1.4 (현행과 같음) 8.1.5 (현행과 같음) 8.1.6 (현행과 같음) 8.1.7 사용연령 :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십시오."(핸드 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에 한함) 8.1.8 한계하중(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u>8.1.7 사용자 한계 체중 (예: 30 kg)</u> <u>8.1.8 한계 하중(예: 50 kg)</u> <u>8.1.9 사용연령</u>
8.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8.2.1 경고 제품의 날개에 다음의 "△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2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8.2.1 경고 제품의 날개에 다음의 "△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2.2 주의 ① 키보드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②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③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④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8.2.2 주의 ① 키보드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②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③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④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현 행	개 정 안
⑤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탈 것 ⑥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u><신설></u>	⑤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탈 것 ⑥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u>8.2 경고 및 금지</u>
	제품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심볼, 도면, 그림을 병행 표시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고> <금지> <강제 행동> 경고 및 금지 심볼의 예시 <u>8.2.1 경고</u> <u>8.2.1.1 안전모와 같은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u> <u>8.2.1.2 부모와 같은 법정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u> <u>8.2.1.3 보호자는 어린이 사용자를 주시하여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u>  경고 및 강제 행동 심볼의 적용 예시 <u>8.2.2 금지</u> <u>8.2.2.1 체중 20 kg 이하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u> <u>8.2.2.2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u>

현행	개정안
	금지 심볼 적용 예시
8.3 사용설명서 다음 사항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3.1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8.3.2 점프 등 안전하지 못한 묘기주행 금지 8.3.3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8.3.4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8.3.5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킵보드 각부의 명칭 <신설>	8.3 사용설명서 다음 사항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3.1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8.3.2 점프 등 안전하지 못한 묘기주행 금지 8.3.3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8.3.4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8.3.5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킵보드 각부의 명칭 8.3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등에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8.3.1 금지

현 행	개 정 안
	8.3.1.1 체중 20 kg 이하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 8.3.1.2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8.3.2 경고 8.3.2.1 안전모와 같은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8.3.2.2 부모와 같은 법정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8.3.2.3 보호자는 어린이 사용자를 주시하여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 8.3.3 그 밖의 주의사항 8.3.3.1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8.3.3.2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은 표면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8.3.3.3 부모와 같은 법정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8.3.4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유의사항과 유지보수 방법에 관한 정보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어린이용 키보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현행 안전기준은 최신 안전 정보인 표시사항 및 구조, 성능 등 사항의 충분한 반영이 미흡
- 어린이용 키보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확한 안전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어린이용 키보드 제품의 구조, 성능 및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표시 신설 등 안전기준 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어린이용 키보드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신설
	내용	제품의 구조, 성능과 한계 체중, 경고 및 금지 사항 등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제품의 품질 신뢰도 제고 및 보다 정확한 안전 정보 제공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제품의 구조, 성능 및 사용연령 표시,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등 현행 수준의 제품 구조와 안전 정보 제공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제품의 구조, 성능 및 표시사항 변경 및 신설을 통해 키보드 오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기대	제품 출시 전 표시사항 변경 비용 등 발생
규제대안2	기존 구조, 성능 및 표시사항 등을 유지하여 제품 출시 용이	키보드 안전 정보제공 등에 한계가 있어 어린이용 키보드 사고 지속 발생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인증, 적합성평가 관련 기관	안전기준 전문가 자문회의 (`25.3.7.) - 개정(안) 시험조건, 표기 사항 등 검토	-	-
관련 제품 유관기관 및 제조업체	안전성 실태조사 평가 자문 (`25.3.14.) -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반대의견 없음	-	-

- 안전성 실태조사 평가 자문(`25.3.14.)에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업계(동방레포츠)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였고 의견 수렴 결과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동의함
- 특히 업계는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커서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재고 물량 소진 및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24.04. ~ '25.04. 연구개발과제 사업 수행을 통해 키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5.3.)을 거쳐 규제대안1을 선택

- 유럽 표준(EN 14619)을 참조 및 부합화하는 작업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업계의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고 최근의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확인된 물리적·화학적 안전성 개선 요구에 따라 규제대안 1을 선택함

*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및 키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24.4.1~25.3.31, 180백만원)

- 어린이용 키보드의 구조, 성능 보완 및 표시사항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어린이용 키보드 안전기준 개정

번호	구분	항목	킥보드		
			현행	개정안	비고
1	겉모양	겉모양	○	○	-
2	구조	구조	○	○	일부내용 변경
3	성능	핸들시험	○	○	시험방법 변경
4		발판시험	○	○	-
5		주행시험	○	○	시험방법 변경
6		바퀴의 경도	○	X	삭제
7		바퀴의 부착강도	○	X	삭제
8		바퀴의 접착강도	X	○	신설
9		도금의 내식성	○	X	삭제
10		충격강도	○	○	시험방법 변경
11		낙하강도	○	○	안전요건 구분
12		접는 장치의 안정성	○	○	시험방법 변경
13		브레이크 제동력	○	X	삭제
14	표시 사항	표시	○	○	체중 등 추가
15		경고 및 금지	X	○	경고, 금지사항 기재
16		사용상 주의사항	○	○	일부내용 변경

3. 규제목표

- 어린이용 킥보드의 구조, 성능 보완 및 표시사항 개선을 통해 어린이 사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 안전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높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갖고 있는 유럽(EN) 안전기준을 참조 및 부합화하는 수준에서 개정안 마련
- 특히, 어린이용 키보드 표시사항 개선은 제품 인증·시험 비용이 아닌 제품 등에 부착하는 라벨 수정 등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어린이 사용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목적·수단의 타당성이 명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어린이용 키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의 규제 조문은 제품의 구조 및 성능 보완 및 제품의 경고 및 금지,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 등에 표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험방법의 변경 등 기술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관련 제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로 경쟁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안전요건으로, 관련 제조·수입업체의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 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본 규제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용 키보드)의 개정에 관한 것이며, 현행 안전기준은 중소기업에 차등적용하고 있지 않음
④ 대상 업종		어린이용 키보드 제조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 비교기준: 어린이제품 국내 안전기준 ○ 규제사례: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안전요건 등 ○ 차등화 여부: 다른 제품관련 안전기준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본 규제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업의 규모와 관련 없이 적용됨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는 적용 면제로 검토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제조자 중심으로 설계된 미국의 재료시험학회 표준인 ASTM F2263, 유럽 안전기준(EN)과 유사한 일본의 제품안전협회 인증 (SG-Mark)도 있으나,
- 유럽 안전기준인 EN 14619* 가 높은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어린이용 킥보드는 사용자 체중에 따라 A, B등급으로 구분)

* Roller sports equipment - Kick scooters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바퀴달린 스포츠 장비 - 킥보드 -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EN 14619	일치	—

○ 타법사례

- 어린이용 킥보드 관련 타법 규제 사례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90.86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90.86		90.8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90.86		90.86
기업순비용	90.86	연간균등순비용	11.99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가 및 업계에서 현행 안전기준 개선을 지속 요구해 온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본 개정안에 대한 업계 등의 준수 및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업계의 기존 재고 제품 소진 및 생산 공정 변경 등 안전기준 표시사항 변경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내·외 안전기준 관련 문헌 조사('24.6. ~ '24.8.), 유통제품 안전성 평가 및 실태조사('24.9. ~ '25.1.),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5.3.)
-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6.7. ~ '26.9.)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된 안전기준 시행 후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어린이용 키보드 구조, 성능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변경을 통해 어린이 사용자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어린이용 키보드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90.86		90.8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90.86		90.86
기업순비용		90.86	연간균등순비용	11.99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어린이용 키보드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어린이용 키보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활동제목	제품시험비용
비용항목	기타
비용	120,000,0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어린이용 키보드 시험의뢰 건수(60) × (추가 시험비용(20만원))
근거설명	1. 제품시험비용 및 시료비 ○ 분석의 가정 - 어린이용 키보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어린이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검사비용 분석을 위해 연간 시험의뢰 건 수와 시험 비용을 곱하고 분석대상기간(10년)과 할인율을 감안하여 직접비용 산출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추가 변경되는 시험(주행 시험 등)은 시험 설비 도입을 통하여 기존 어린이용 키보드 시험 가능 기관을 통해 시험할 수 있음(설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음) - 연간 시험의뢰 건수는 최근 3년 어린이용키보드 시험의뢰 건수의 평균으로 가정함. (3년 평균×시험기관(2)) - 시험 비용에는 기존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금액을 반영함 ○ 근거제시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법에 따라 어린이용 키보드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 후 스스로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시험 가능 기관 현황) 어린이용 키보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 가능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2곳이 있으며 타 기관도 시험 준비중임.

	2023년	2024년	2025년
KCL	33	30	24
KTC	16	17	12
합계	49	47	36

－ (추가제출 시료 수 및 비용) 시험기관을 통해 협의한 결과, 시료는 시험 전체를 위해서 2개의 시료가 필요하며, 현재 안전기준상 시료수와 동일함. 따라서 추가 시료와 관련한 비용은 없음.

－ (시험비용) 기존의 안전기준과 큰 차이는 없으나 실질적인 사용환경을 반영한 주행시험의 시험방법 변경으로 해당 항목의 수수료 인상분* 을 반영함

* 주행시험 : 200,000원 (기존 대비 인상금액)